

## ■ 청약신청 유의사항

- 자세한 사항은 청약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구분	내용
신청자격	<p>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(경기도 및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)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(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)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(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.) (단,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</li> <li>- 세대주일 것</li> <li>-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</li> <li>※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 및 그 배우자, 피부양자(노부모)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(「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)</li> <li>※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</li> <li>※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(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)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 제6호 미적용)</li> <li>※ 소형·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3조제9호 소형·저가주택은 동법 제28조에 따른 일반공급에 만 해당하므로, 기관추천 특별공급에는 무주택으로 판단하지않음)</li> <li>※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(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에 따른 청약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)</li> <li>※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'노부모부양특별공급' 신청 불가합니다.</li> </ul> <p>-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'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' [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-269호(2018.05.08.)]에 따름</p>
당첨자 선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(경기도 광주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) 신청자가 우선함.</li> <li>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,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.</li> <li>-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'청약가점 산정기준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별표1)'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.</li> <li>-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, 당첨 취소 및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,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.</li> <li>-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(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)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</li> </ul>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,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 제1호 및 제8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).</li> <li>•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,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.</li> </ul>

## ■ 당첨유형별 제출서류

구분	서류유형		발급기준	해당서류	유의사항
	필수	해당자			
노부모부양 특별공급	○	당첨자	당첨자	신분증 사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
	○	당첨자	당첨자	주민등록표 등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,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당첨자	당첨자	주민등록표 초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, 주소 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당첨자	당첨자	가족관계증명서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당첨자	당첨자	출입국사실증명원	"출생일~2021년 현재" 내역 / 인터넷 '정부24' (또는 주민센터)에서 발급가능 ※특별공급 기관추천 당첨자는 제외
	○	당첨자 및 직계비속	당첨자 및 직계비속	혼인관계증명서	혼인여부 확인 및 무주택 확인 등 (상세로 발급) ※직계비속의 경우 만18세 이상자에 한함
	○	당첨자 및 세대원	당첨자 및 세대원	무주택 소명자료	무주택 및 무주택간주(소형저가주택, 농어가주택 등)를 증명하는 서류 - 건물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주택공시가격증명원, 무허가건물확인서등
	○	[분리세대] 배우자	[분리세대] 배우자	주민등록표 등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,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[분리세대] 배우자	[분리세대] 배우자	가족관계증명서	배우자 분리세대이며,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에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을 경우 (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)
	○	[재혼] 배우자	[재혼] 배우자	가족관계증명서	전혼 자녀가 당첨자의 주민등록표상에서 당첨자와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("상세"로 발급)
	○	당첨자	당첨자	해외근무 증빙서류	증빙관련 서류 (파견 및 출장 명령서,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)
	○	당첨자	당첨자	복무확인서	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(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포함)
	○	직계존속	직계존속	주민등록표 초본	당첨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세대주와의 관계 명시/본인만 발급 가능) ※ 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: 배우자의 직계존속서류 추가제출
	○	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	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	가족관계증명서	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/무주택 여부 확인 ※ 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: 배우자의 직계존속서류 추가제출
	○	직계비속	직계비속	혼인관계증명서	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(만18세이상 미혼자녀/상세로 발급)
	○	세대원 (배우자, 직계존비속등)	세대원 (배우자, 직계존비속등)	출입국사실증명원	세대원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- "출생일~2021년 현재" 내역 / 인터넷 '정부24' (또는 주민센터)에서 발급가능
○	[분리세대] 직계존속의배우자	[분리세대] 직계존속의배우자	주민등록표 등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,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	
○	배우자	배우자	가족관계증명서	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	
○	직계비속	직계비속	주민등록표 초본	만30세 이상 미혼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(세대주와의 관계 명시/본인만 발급 가능)	
대리인신청서	○	당첨자	당첨자	인감도장, 인감증명서	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. 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)
	○	대리인	대리인	신분증, 인장	당첨자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함(직계존·비속 포함)

※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.

※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"상세표기" 및 "전체공개"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. (과거전입사항/주소변동 내역/세대원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등)

※ 제출서류는 당첨자격 심사 과정에서 아래 명시된 서류 외에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